불법찬조금

예방

CARD NEWS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불법찬조금 이란?

학부모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방과후교육활동 청소년단체, 교육활동 후원단체)등이 교육활동 지원을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으로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 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그게..뭔데?

주요 유형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교직원 등이

- 대회출전비, 운동부 훈련비 및 간식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하여 집행
- 학부모부담으로 모금하여 운동부 지도자에게 승리수당, 성과금 등 지급
- 정기공연, 워크숍 등에 필요한 소품 구입, 운영비 등을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하여 집행
-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에서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학생 간식비, 학교행사 지원(스승의 날, 운동회, 현장학습, 졸업식 등), 교직원 선물비, 학급 운영비 등을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당·모금하여 집행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 절차없이 모금 또는 금품 접수

모두의 실천이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청렴한 경기교육을 만듭니다.

청렴!
실천!

불법찬조금 신고

신고센터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www.goe.go.kr)
⇒ 민원/참여 ⇒ 신고센터 ⇒ 공익제보센터
⇒ 불법찬조금 신고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우리 아이의 정정당당한 미래, 청렴한 학교 운동부로부터 시작됩니다

조심해야 할 '불법찬조금'과 그 위험성

학교 회계 밖의 모든 금품은 '위법'입니다

학부모 단체가 임의로 모금하여
학교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사용하는
모든 돈은 불법찬조금에 해당합니다.

관행이라는 이름의 잘못된 사례들

대회 출전비·간식비 개인 계좌 모금,
지도자 승리수당 직접 지급
합숙소 운영비 할당 각출 등이 대표적입니다.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모두 엄벌 대상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으며, 청탁금지법에 따라
학부모와 지도자 모두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를 돕는 투명하고 올바른 방법

모든 후원은 반드시 '학교 회계'를 통해

정당한 기부금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학교발전기금'으로
기탁하여 투명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지도자 인건비 직접 지원은 절대 금지

코치 등 지도자의 수당은
발전기금으로 조성할 수 없으며
반드시 학교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합니다.

용기 있는 제보가 깨끗한 스포츠를 만듭니다

비실명 대리 신고로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며,
공익에 기여한 제보자에게는 포상금 및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GYEONGGIDO BUCHEON OFFICE OF EDUCATION